물 품 구 입 시 방 서

[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수입산 수분조절제(대패톱밥) 구입]

1. 구입일반사항

가. 본 시방서는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수입산 수분조절제(대패톱밥) 구입에 적용한다.

나. 구입내역

품목	규격	수량	단가 (원)	금액 (부가세포함)	비고
대패톱밥	1KG	280,000	350	98,000,000	컨테이너

다. 위 금액은 도착도로 부가세, 운송비, 보험료, 반품・교환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.

라. 납품기한 : 계약일로부터 2026. 12. 31.까지

2. 물품규격

○ 품　　명 : 대패톱밥

○ 제품형태 : 수입산 톱밥(소나무가 포함된 양질의 톱밥)

○ 원 산 지 : 수입산

○ 수　　분 : 15%이하

○ 제품규격 : 대패톱밥 : 5~15mm이하의 규격 90% 이상

○ 포장방식 : 블럭압축하여 톤백 포장

○ 제품의 특징

- 뿌리 및 가지로 파쇄한 톱밥(수피 톱밥)은 금지한다.
- 거칠지 않으며, 부드러울 것(가축의 살갗 등에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됨)
- 납품 전 최대한 건조하여 수분을 줄인 상태에서 납품하여야 한다.

○ 납품방법은 톤백 납품을 하여야 한다.

○ 계약 전 납품하는 톱밥 샘플을 제시해 통과 하여야 한다.

○ 목재수입유통업,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납품조건

가. 납품방법

○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하여야 한다.

-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일정을 조율 할 수 있다.

○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시설과 물품규격(가루, 지대, 톤백 등)에 맞는 운송수단(윙카, 벌크차량, 각종 트럭, 컨테이너, 전용차량 등)을 활용하여야 한다.

○ 발주량 및 발주빈도

- 1회 발주 물량 : 23,000 ~ 24,000Kg
- 발주 계획 : 12회

○ 매입/납품처리

※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의 계량증명서에서 250Kg(기본 파레트중량)을 감하여 매입/납품처리한다.[상세사항 라. 납품(입고)의 교차검증 참고]

나. 납품장소

○ 발주부서에서 납품 장소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물품은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(전북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)에 납품(하차)하여야 한다.

다. 납품기한

○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이다.

○ 당사의 발주량 감소 등 수급문제로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당사에서 계약기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협조하여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운영(생산 중단 등)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- 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연장을 위해서 국제 원재료 가격, 통관 및 운임(CIF 등 포함), 환율 매매가, 운임비, 보관비용, 국제 시장 환경(수요・공급, 기상조건)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여 및 계약하여야 한다.
-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하며, 변경계약(계약기간 연장)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손해가 예상되어 연장을 거부할 경우 변경계약 하지 않을 수 있다.

라. 납품(입고)의 교차검증

○ 물품납품 시 계량정보(거래명세표, 검근표, 계량증명서, 패킹리스트 등 해당되는 것)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다만 계량정보를 갖출 수 있는 상황(시스템)이 아닐 경우 거래명세표 등으로 대체 및 생략할 수 있으며, 거래명세표도 불가할 경우 납

품서로 그 기능을 대체한다. 수분조절제의 경우 컨테이너 1대당 TMR사료공장 계량증명서의 실중량에서 250Kg(파레트중량)감하고, 트럭으로 납품할 경우 1파레트당 10Kg씩 감하여 입고/납품 처리한다.

- 파레트가 보편적인 것(1파레트 10Kg)과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와 당사는 이의제기할 수 있고, 계약상대자와 당사는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250Kg이상 혹은 250Kg이하로 감할 수 있다.

마. 초과물량

○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 및 수량을 벗어나는 초과물량(초과중량)을 납품하지 않도록 당사 발주담당자에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여야 한다.

-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납품이 발생할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라 10%이내에서 증감·활용할 수 있다.

바. 물품검수

○ 물품납품 시 당사는 물품검수를 진행하며, 납품조건(물품의 품질 및 규격)에 미달되거나 입고 후 제조과정에서 추가로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반품 및 교환하여야 한다. 또한 당사는 규격미달에 대한 사안이 중대해질 경우 책임소재 판명 후 관련법령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경고·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민·형사상의 소송을 할 수 있다.

○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의 물품검수·검사·입회 담당자는 납품 물품에 대해 자체검수(관능, 물리, 화학검사 등)를 진행한 후 입고 및 반품(규격미달 시)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그 결과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. 물품검수는 아래와 같다.

- 관능검사 : 균일성, 고유의 성상, 건조상태(수분), 색상, 열처리, 크기(입자도), 이물질, 펠렛 성형, 가루, 맛, 감촉, 냄새, 특유의 소리 등을 판단 할 수 있다.
- 물리검사 : 체 선별법, 비중 선별법(침강, 부상) 등을 활용 할 수 있다.
- 화학검사 : 입자도, 내구도, 경도, 비중, 성분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.

○ 당사는 납품 물품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외부검수(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기관)를 의뢰할 수 있다.

사. 물품규격에 대한 증명

○ 위의 납품조건(물품규격)을 통과한 품질(규격) 및 안정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분석 증명서가 오랜 기간 경과했을 경우 품질 및 안전

성 관련 검정기관에 재의뢰하여 당사에서 제출 요구 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○ 다만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, 당사도 불필요한 원가가 크게 상승하므로 상호합의에 따라 사료검정증명서, 분석결과서, 시험성적서 등 물품의 품질(규격) 및 안정성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증명서의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.

○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건으로 시장에 유통(생산 및 판매)되었으나 물품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사결과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분석 증명서가 조작 · 허위로 판명되면 관련법령 및 상호합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아. 계약불이행

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을 제외한 물품납품 불이행(납품 연기, 납품 요청일 변경 등) 시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, 당사는 책임소재 판명 후 관련법령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경고·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민·형사상의 소송을 할 수 있다.

○ 물품의 특성상 수시 발주가 이루어지므로 당사에서 요청하는 납품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.

○ 이에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및 계약 전에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당사에서 요청하는 납품일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자. 지급결제

○ 대금정산은 납품 당월에 당월말 마감 후 익월초 청구서 제출 후 90일 내외에 지급한다.

○ 검수 · 지급 관련 서류 제출 미흡 및 지연 시 검수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.

- 검수 · 지급 관련 서류 정상제출 기준 : 물품납품 → 익월초 검수 및 지급 서류 제출완료

· 지급서류 : 청구서, 전자세금계산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국세납세증명서, 4대보험 완납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거래명세표 등

· 검수서류 : 납품서, 계량확인서(계근표, 패킹리스트, 거래명세표 등), 검사성적서 등

차.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원활한 거래를 위해 TMR사료공장 자체에서 제공하는 ‘TMR 물품 거래 지침서’를 참고하여야 한다.

○ 물품수량의 입고결정, 납품 후 서류 제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함.

카. 변경계약

○ 계약기간 동안 천재지변,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

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.

4. 특약사항

가. 물품납품 시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 및 운전자의 소독일지 사본을 당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,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 운송차량으로는 납품하지 아니한다.

나.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에 속한 배합사료 공장 또는 물류공장에서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으로 원료를 직송하여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며, 비발생지역의 물류공장 및 환적장을 통한 물품만 납품하여야 한다.

5. 기타

○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팀(063-351-0666), 구입품목(물품규격 등)에 관한 사항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사료관리팀(063-353-0666)으로 문의 바랍니다.